

의안번호	2215648
의 퇴 인	손명수의원
회 답 일	2026.1.27.
추계번호	25B727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2항·제3항 신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시공 중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계측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0조제2항·제3항 신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운영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수행 시 자동화계측기를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자동화계측기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개발사업자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해당 사업별 자동화계측기의 종류, 설치수량, 계측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자동화계측기 종류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참고할 수 있음

[자동화계측기기 현황]

구 분	내 용	단가(천원)
지중경사계	• 굴착 및 성토시 지반의 공동현상 및 수평변위량 측정	1,300
지하수위계	• 굴착중 주변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증감) 측정	2,200
하중계	• 굴착중 흙막이 부재의 하중 및 인장력의 증감량, 변화속도 측정	600
변형률계	• 굴착중 흙막이 부재의 늘임량, 변위 측정	135
균열측정기	• 지하굴착 중 인접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의 변형량 측정	600

자료: 종합물가정보 2026.1월, p1051~1052,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